

	SDS HiVE센터 운영규정	제정일	2022. 7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SDS HiVE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성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SDS HiVE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SDS HiVE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운영계획 수립
2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
4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칙

제 3조 (조직 및 임명) ① SDS HiVE센터는 동서울대학교 내에 두고,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한다.

② SDS HiVE센터의 센터장은 동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보하고, 부센터장은 동서울대학교, 신구대학교 각 1명을 보한다.

제 4조 (책임교수 및 연구원, 직원 등) ① SDS HiVE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교수 및 연구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SDS HiVE센터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·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하여 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, 학과 사정에 따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이외의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, 신구대학교 교직원과 성남시 공무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고,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

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
2. 인재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사업비 운영의 집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6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SDS HiVE센터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동서울대학교와 신구대학교 교직원 및 성남시공무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SDS HiVE센터장의 제청으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
2.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성과지표 평가 및 심의
3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7조 (교육품질관리위원회) ① SDS HiVE센터 사업의 교육과정 개발 및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육품질관리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교육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사항
2. 특화분야 교과목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편성(개발·개편·변경)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제 8조 (실무협의회) SDS HiVE센터 관련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성남시, 동서울대학교, 신구대학교, 산업체 실무자의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.

제 9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기타)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